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 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작성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업무상사고 조사표

유의	

- 본 조사표는 귀 사업장에서 요양신청한 재해자의 사고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동종재해예방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 우측의 해당 재해자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관련내용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기록한 조사표는 동봉한 회송봉투에 넣어 보내 주시 기 바라며
- 팩스로 보내실 경우 반드시 앞면의 조사표번호를 뒷 면에 기재하시고 확인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뒷면만 보내실 경우, 뒷면 상단 공백에 작성자 이름(소속)및 연 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송주소:

25 전화:

28 팩 스 :

조사표 번호:

재 해 일 자 :

재 해 자 명 :

주민등록번호:

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작성날짜: 년 월 일

작성자 이름 : 소속부서: TEL:

I. 사업장	정보					◎조 사 표	번 호				
업 종			<sup>②</sup> 근로자수		명	※ 업종이	⑤공사종	5류			
<sup>③</sup> 주요생산품 ·			<sup>®</sup> 사업장	□도급(원청) □	기타( )	건설업인	<sup>®</sup> 공정율	울(%)			
공사 및 세비스			형 태	□수급(하청)		(0~0)	<sup>⑦</sup> 총공/	사금액(백민	<u> </u> 원)	백민	<u> </u>
			'						'		_
Ⅱ. 재해자	정보										_
⊕직업/직위			재해발신	남 □작업 전 □정	헝규작업 □	연장근무 □식	사휴식	⑤상해종	류		
평 소 업 무			시점	□출퇴근 □휴	일근무 🗆	기타( )		<sup>©</sup> 상해부			
②고용형태	□상용 □ □시간제 □	임시 □일용 기타(	용 ) <sup>®</sup> 근 로	□사망 □경 □부상(결근 :				<sup>⑦</sup> 동종업두	과거사		<u>일</u>
<sup>3</sup> 근무형태	□정상 □: □3교대 □	2교대 기타(	손실일	※ 현 근무상				근속기		시 사업장 대 원 역	일
		714(							· <u> </u>		≞_]
Ⅲ. 재해발성	뱅 정보										
인 적 피 (	해 부상	명 사	망명	҈҇҇҇҇҇҇҇	소/부서				/		
<sup>②</sup> 재 해 원 인 이	된 작업공정	형 · 내용									
<sup>③</sup> 재해당시 =	수행 작업공정	형 · 내용									
☞개 인 보 호	호 장 비 [	□착용대상	□착용비□	배상 【 □착용	□미착용	용 (장비:				)]	
<sup>⑤</sup> 안 전 · 방 :	호설비	□설치대상 	□설치비[	대상 【 □설치	□미설치	i (장비:				)]	
<sup>®</sup> 재해유발 기기					(		ار® (	해 물			
⑦재 해 발	생 형 태						<sup>⑨</sup> 작	업형태	□단독 □	복수명	\$
재해발생형(		북 높이(		)m 추락장소(				재·폭발			
추가 정보	라 감 간	전 전압(		)V 접촉부위( 			) 6	점화원			
IV 재해박실	배 까정 및	워이에 대	하여 가랻	히 서술하십시	I Q						
				또는 작업상황		〕 발생시점의	「작	업자(또는	재해자)의	움직임, 형	행
위」에 대하 는지 단계별				취급설비, 공구,	원재료오	과 작업자(또	를 재히	내자)의 싱	∤관관계>」 <sup>₫</sup>	를 발생되었	었
재해를 유발형 환경요인 등에				및							
재해를 초래히 행동에 대한 별			는 동료의								

# 조사표 기입 및 작성 예시(건설업)

☞ 본 예시는 건설업종을 예를 들어 작성한 것으로써 각 항목의 작성요령을 꼭 읽어보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업, 기타산업은 뒷면예시 참조)

### 1. 사업장 정보

2004 - 2\* - \*\*\*\* ◐조 사 표 번 호

-													
업	종	상업용	건물	건석업	<sup>②</sup> 근로자수	150	명	*		<sup>⑤</sup> 공사종류	0 0 공	강 증축공	당사
<sup>③</sup> 주:	요생산품・	공강,	οίπι	E	<sup>④</sup> 사업장	☑도급(원청) □	기타( )		건설업인 경우 해당	<sup>©</sup> 공정율(%)	75%		
공사	및 세비스	<del>~</del> ~ 6,	714.	_	형 태	□수급(하청)			(5~7)	<sup>⑦</sup> 총공사금액	(백만원)	5,700	백만원
1	① 조사표번호: 「업무상사고 조사표」표지의 우측 중간의 조사표번호「2004-2*-****」을 그대로 기입												
2	② 근로자수 :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등 급여를 받는 월평균 근로자수를 기재하되, 재해발생년도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기재												
3	주요 생산물	f·공사 및	서비스 :	: 재해발생	연도의 매출	액(공사 실적액)이	높은 순서	대로	르 <u>최대 4종</u>	까지 공사종류	를 기재		
*	수급(하청	)업체의 경	영우도 5	E급(원청)업	체 공사 실적	l 기재							
4	④ 사업장형태 : 재해자가 소속된 사업장(급여를 지급 받는)을 표시하되, 수급사업장은 도급사업장내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임												
⑤	⑤ 공사종류 : 재해당시 진행중인 공사의 명칭을 기재하되, 수급(하청)업체의 개별공사가 아닌 도급(원청)업체의 공사종류를 기입												
ľ	【 예 : 아파트, 상가, 공장건물, 플랜트(석유화학,제조시설 등), 교량, 지하철, 도로 등 】												
6	⑥ 공정율 : 재해발생 시점의 단위공정별 공사 진척도가 아닌 <b>해당 건설현장의 전체 공사 진척도를 기재</b>												

## Ⅱ. 재해자 정보

<sup>①</sup> 직업/직위	건묵도장원 / 반장	재해발생	□작업 전 ☑정규작업 □연장근무 □식사휴식	⑤상해종류	- 공전
평 소 업 무	도강작업	시점	□출퇴근 □휴일근무 □기타( )	<sup>⑥</sup> 상해부위	러시
<sup>②</sup> 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시간제 □기타( )	<sup>®</sup> 근 로	☑사망 □장해(등급:급) □부상(결근: 일, 통원치료 등: 일)	®동종업무	과거사업장 : <u>15</u> 년 8월 <i>15</i> 일
<sup>3</sup> 근무형태	☑정상 □2교대 □3교대 □기타( )	손실일	<u> </u>	근속기간	현 재직 사업장 : <u>1</u> 년 6월 9일

① 직업/직위 : 평소 수행하는 정규 직업과 직책을 기재하되 사무직, 생산직 등 막연하게 작성하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위주로 기재함

⑦ 공사금액: 발주처로부터 도급(원청)업체가 수주받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재 (※ 수급(하청)업체별 공사금액이 아님)

- 【 예 : 금속모형제조원, 육상화물하역원, 콘크리트완성원, 한식조리사, 고속버스운전사, 회계사무원, 주차장관리원 … / 과장, 반장, 조장, … 】
- ② 고용형태: ③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
  - ©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계절제 등 단기 계약직을 말함)
  - © 일용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 ② 시간제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일일 정상근로시간 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자**
  - ◎ 기타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 자영업자 등
- ③ 근무형태 : ① 정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18시 전후에 퇴근하는 형태
  - ◎ 2교대, 3교대 동일작업이 2개조, 3개조에 의해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형태이나 1개월 이상을 주기로 순환되는 형태는 제외
  - ⓒ 기타 고정적인 야간업무(1개월 이상인 경우) 등
- ④ 근로손실일: 사망자, 장해자의 경우 구체적 근로손실일수를 기재하지 않고 사망, 장해등급을 기재함
  - 부상자는 결근일수(재해당일을 제외한 출근을 하지 못한 일수로 공휴일도 포함)와 통원치료 등의 일수를 각각 기재
  - ※ 통원치료 등 : 회사에 정상 출근하였으나 일과 중 통원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일수 (업무량, 업무시간 감소, 작업전환 등 포함) ※ 조사당일까지 사업장에 복귀하지 못하였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조사당일 또는 퇴사 이후의 요양 또는 치료일수를
  - 추산하여 합산함(의사진단서의 진단일수로 가늠)
- 【 예 : 오늘 조사기준일로 사고부상자의 재해일자는 2003.3.3일이며 3월10일까지 결근하였고(⊙) 11일~14일까지는 통원치료를(ⓒ) 했을 경우 근로손실일은 ⇒ 7**일(③) + 4일(ⓒ) = 11일**이 됨 】
- ⑤ 상해종류 :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된 신체적 특성·상해형태 【예:절단, 뼈 부러짐, 찔림, 창상, 타박상, 찰과상, 화상, 호흡가소화기 손상 등 】
- ⑥ 상해부위 : 부상 또는 질병이 나타난 신체부위로 진단 받은 신체부위
- 【 예 : 머리, 눈, 얼굴, 몸통, 허리, 손가락, 전신 등(만약 중대한 상해부위가 2부위 이상이면 모두 기록)】
- ⑦ 동종업무근속기간: 과거 사업장과 현 재직 사업장의 근무경력을 <mark>각각 기재하되, 재해발생당시 회사에서 근무중인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mark> 근무경력에 한함.

## Ⅲ. 재해발생 정보

III. 새애벌생 성도									
인 적 피 해 부상 <u></u> 명 사망 <u>1</u> 명 <sup>©</sup> 재해발생장소/부서 <i>공장 증축공사현장 /</i>									
<sup>©</sup> 재해원인이 된 작업공정·내용									
®재해당시 수행 작업공정·내용 및 도상 작업									
<sup>®</sup> 개 인 보 호 장 비   ☑착용대상   □착용비대상 【 □착용  ☑미착용 (장비: °안전모 )】									
®안전·방호설비 ☑설치대상 □설치비대상【□설치 ☑미설치(장비: 안전년간 )】									
<sup>®</sup> 재해유발 기계, 물체(물질) 중 충 문이 적 재 된 간이 손수 계( ) <sup>®</sup> 가 해 물 바닥									
<sup>®</sup> 재 해 발 생 형 태 추삭(떠어진)									
재해발생형태별 추락 높이( 1.7 )m 추락장소( 이동식 등비계 ) 화재·폭발									
추가 정보 <u>강 전 전압(</u> )V 접촉부위( ) 점화원									
① 재해발생장소/부서 : 사고가 최초로 발생된 지점으로 장소가 생산동, 사무실인 경우는 부서명도 기재 ※ 다른 부서의 작업상황으로 인한 재해발생은 재해자의 작업중이던 장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재해원인이 된 작업공정·내용: 사고발생에 근본적 원인이 된 작업공정과 그 작업공정 중에 사고를 유발한 작업자의 수행내용 또는 행위를 기술									
※ 재해자 본인의 작업공정 또는 내용이 아닌 동료 작업자의 작업공정·내용 일 수도 있음 【 작업공정·내용 예 : ○○프레스를 이용한 성형공정 중 금형교체 작업, 컨베이어를 이용한 화물 운반공정 중 차량에 상역작업.									
관 배설공사 중 용접작업, 비계설치공정 중 볼트 체결작업, 오토바이로 음식배달 작업, 아파트 순찰업무 등 】									
③ 재해당시 수행 작업공정·내용: <u>사고발생 당시 재해자가 수행중인</u> 작업공정과 작업수행내용 기술 ※ 재해원인이 된 작업공정·내용과 재해당시 수행 작업공정·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한번만 기재									
④ 개인보호장비: 당해 재해와 관련하여 작업수행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함으로써 재해 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더라면 『착용대상』에 기재하고 , 재해 피해 경감이 곤란하면 『착용비대상』에 기재									
※ 착용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착용 또는 미착용 중 하나에 반드시 ☑표시하고 개인보호장비명 기재									
【 착용대상 예 : 공사현장에서 <i>안전모</i> 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중 낙하물에 <i>충돌</i> 하여 <u>머리 상해 입은 경우</u> 】 【 착용비대상 예 : 작업현장에서 <i>안전화</i> 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50m이상의 높이에서 <i>추락</i> 하여 <u>두개골 골절</u> 재해를 입은 경우 】									
⑤ <b>안전·방호설비 : 당해 재해와 관련하여 작업수행시</b> 안전·방호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재해 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더라면 <b>『설치대상』</b> 에 기									
재하고, 재해 피해 경감이 곤란하면 <b>「설치비대상」에</b> 기재									
※ 설치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 또는 미설치 중 하나에 반드시 ☑표시하고 안전·방호설비명 기재									
【설치대상 예: 프레스작업 중 광전자식 안전방호장치 기능을 중지한 상태에서 성형 작업을 하다 프레스기에 끼이는 재해발생 】 【설치비대상 예: 제품을 차량에 적재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추락한 재해 또는 공장에서 사무실로 이동 중 결빙된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 재해 】									
⑥ 재해유발 기계, 물체(물질) : 사고 발생을 일으킨 직접원인이 된 설비, 시설 등 즉, 기인물을 말함									
※ 사고발생의 직접원인으로 재해자가 취급하던 설비가 아닌 주변설비 또는 동료 작업자의 취급 설비도 될 수 있음									
【 예 : 프레스, 호이스트, 벨트컨베이어, 분쇄기, 로울러기, 수공구, 바닥, 지붕, 산화에틸렌, 신나, 사람, 개 등 】									
⑦ 재해발생형태 : 재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재해유발 기계 또는 물체(물질)와의 관계된 발생현상 【 예 : 떨어짐, 미끄러짐, 설비에 <u>끼임</u> , 회전부위에 <u>강김</u> , 날아오는 물건에 <u>부딪힘</u> , 적재물 <u>무너짐</u> , 화재, 감전, 고온저온에 접촉, 유해위험물 접촉 등 】									
® 가해물 : 재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기계, 물체 또는 물질 【 예 : 목재가공용 둥근톱으로 각재를 절단하던 중 절단편이 비래되어 얼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기인물은 목재가공용 둥근톱이고 가해물은 각재 절단편임 】									
⑨ 작업형태 : 동일 작업지역·작업공정에 투입한 인원과 작업형태가 아닌, 「동일 작업수행을 목적으로」 투입한 인원과 작업방식을 말함									

## IV. 재해발생 과정 및 원인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십시오.

사고와 직접 연관이 되었던 「작업공정의 운전 또는 작업상황」과 사고 발생시점의 「작업자(또는 재해자)의 움직임, 행위」에 대하여 기재하고, 사고가 「어떤 형태<취급설비, 공구, 원재료와 작업자(또는 재해자)의 상관관계>」로 발생되었는지 단계별로 그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입 공장동 중축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이동식특비계의 쐐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층 내

부 벽체 도장작업 중 잔여자재를 운반하던 동료작업자의 간이손수례와 충동하면서 지하층 바닥

【 예 : 복수 2인 - 2인1조로 승강기를 이용 운반작업시 1명은 1층에서 화물을 적재, 1명은 5층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

으로 추삭하여 사망한 재해있

재해를 유발한 설비·기계, 구조물, 작업공정 및 환경요인 등에 잠재된 불안전 요소는?(물적요인)

재해를 초래하게 된 작업자 자신 또는 동료의 행동에 대한 불안전 요소는?(인적요인)

# 조사표 기입 및 작성 예시(제조업 등 기타산업)

☞ 본 예시는 제조업종을 예를 들어 작성한 것으로써 건설업 이외 모든 업종에서 참고하시되, 각 항목의 작성요령을 꼭 읽어보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뒷면예시 참조)

## 1. 사업장 정보

<sup>①</sup>조 사 표 번 호 2004 - 2\* - \*\*\*\*

	업	종	플사스틱제품 제조업	<sup>②</sup> 근로자수	60명			⑤공사종류	
	<sup>③</sup> 주요생신	・岩	픇사스틱 용기, 뚜껑	<sup>④</sup> 사업장	☑도급(원청) □기타(	)	건설업인 경우 해당	<sup>®</sup> 공정율(%)	
ı	공사 및 서	신바	(병, 통, 따개 등)	형 태	□수급(하청)		(5~7)	⑦총공사금액(백만원)	백만원

- ① 조사표번호: 『업무상사고 조사표』표지의 우측 중간의 조사표번호 「2004-2\*-\*\*\*\*」을 그대로 기입
- ② 근로자수: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등 급여를 받는 월평균 근로자수를 기재하되, 재해발생년도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기재
- ③ 주요 생산품·공사 및 서비스 : 한 개 이상 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 할 경우, <u>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최대 4종까지의 생산품</u> 또는 서비스 업태를 기재
- ④ 사업장형태: 재해자가 소속된 사업장(급여를 지급 받는)을 표시하되, 수급사업장은 도급사업장내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임
- ⑤ 공사종류 : 제조업 등 기타 산업분야는 미기재 (※ 건설업인 경우만 기재)
- ⑥ 공정율 : 제조업 등 기타 산업분야는 미기재 (※ 건설업인 경우만 기재)
- ⑦ 공사금액: 제조업 등 기타 산업분야는 미기재 (※ 건설업인 경우만 기재)

#### Ⅱ. 재해자 정보

⊕직업/직위	사축기조작원/ 조장	재해발생	□작업 전 ☑정규작업 □연장근무 □식사휴식	<sup>⑤</sup> 상해종류	전기학상
평 소 업 무	사충성형기조작(픇사스틱용기)	시점	□출퇴근 □휴일근무 □기타( )	<sup>©</sup> 상해부위	손
<sup>②</sup> 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시간제 □기타( )	<b>⊕</b> 근 로	□사망 □장해(등급:급) ☑부상(결근: <u>35</u> 일, 통원치료 등: <u>20</u> 일)	<sup>⑦</sup> 동종업무	과거사업장 :_2년 1월 15일
③근무형태	☑정상 □2교대 □3교대 □기타( )	손실일	※ 현 근무상태 : ☑재직 □퇴사	근속기간	현 재직 사업장 : 4년 3월 9일

- ① 직업/직위 : 평소 수행하는 정규 직업과 직책을 기재하되 사무직, 생산직 등 막연하게 작성하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위주로 기재함
- 【 예 : 금속모형제조원, 육상화물하역원, 콘크리트완성원, 한식조리사, 고속버스운전사, 회계사무원, 주차장관리원 ⋯ / 과장, 반장, 조장, ⋯ 】
- ② 고용형태 : ¬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
  - ©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계절제 등 단기 계약직을 말함)
  - © 일용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 ② 시간제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일일 정상근로시간 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자**
  - 이 기타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 자영업자 등
- ③ 근무형태 : ① 정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18시 전후에 퇴근하는 형태
  - © 2교대, 3교대 동일작업이 2개조, 3개조에 의해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형태이나 1개월 이상을 주기로 순환되는 형태는 제외
  - ⓒ 기타 고정적인 야간업무(1개월 이상인 경우) 등
- ④ 근로손실일: 사망자, 장해자의 경우 구체적 근로손실일수를 기재하지 않고 사망, 장해등급을 기재함
  - 부상자는 <u>결근일수(재해당일을 제외한 출근을 하지 못한 일수로 공휴일도 포함)</u>와 <u>통원치료 등의 일수</u>를 각각 기재
    - ※ 통원치료 등 : 회사에 정상 출근하였으나 일과 중 통원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일수 (업무량, 업무시간 감소, 작업전환 등 포함)
    - ※ 조사당일까지 사업장에 복귀하지 못하였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조사당일 또는 퇴사 이후의 요양 또는 치료일수를 추산하여 합산함(의사진단서의 진단일수로 가늠)
- 【 예 : 오늘 조사기준일로 사고부상자의 재해일자는 2003.3.3일이며 3월10일까지 결근하였고(⑤) 11일~14일까지는 통원치료를(⑥) 했을 경우 근로손실일은 ⇒ 7일(⑥) + 4일(⑥) = 11일이 됨 】
- ⑤ 상해종류 :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된 신체적 특성·상해형태【 예: 절단, 뼈 부러짐, 찔림, 창상, 타박상, 찰과상, 화상, 호흡가소화기 손상 등 】
- ⑥ 상해부위 : 부상 또는 질병이 나타난 신체부위로 진단 받은 신체부위
- 【 예 : 머리, 눈, 얼굴, 몸통, 허리, 손가락, 전신 등(만약 중대한 상해부위가 2부위 이상이면 모두 기록)】
- ⑦ 동종업무근속기간: 과거 사업장과 현 재직 사업장의 근무경력을 각각 기재하되, 재해발생당시 회사에서 근무중인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근무경력에 한함.

#### Ⅲ. 재해발생 정보

All all 2002													
인 적 피 해 부상 <u>1</u> 명 사망 <u>명</u> <sup>©</sup> 재해발생장소/부서 <i>플나스틱용기 생산동 / 사충성형부</i>													
◎재해원인이 된 작업공정·내용 플라스틱사축성형공정에서 p.p수지 자동송급장치 전건은 위한 이동중										동중			
®재해당시 수행 작업공정·내용 상동													
<sup>®</sup> 개 인 보 호 장 비 □착용대상 □착용비대상 【□착용 □미착용(장비: )】													
<sup>®</sup> 안 전 · 방 호 설 비   ☑설치대상   □설치비대상 【 □설치  ☑미설치 (장비: <b>시축성형기 하터 충전전자부 병호덮개</b> )】								<b>挝</b> 개 )]					
<sup>®</sup> 재해유발 기계, 물체(旨	사축	성형	7			(	)		<sup>®</sup> 가 해 물	전류			
♡재 해 발 생 형	태	강전	-							<sup>⑨</sup> 작업형태	☑단독	□복수	명
재해발생형태별 =	재해발생형태별 추락 높이( )m 추락장소( ) 화재·폭발												
추가 정보 감전 전압( 380 )V 접촉부위( 오 은 손 ) 점화원													
① 재해발생장소/부서 : 사고가 최초로 발생된 지점으로 장소가 생산동, 사무실인 경우는 부서명도 기재 ※ 다른 부서의 작업상황으로 인한 재해발생은 재해자의 작업중이던 장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② 재해원인이 된 작업공정·내용: 사고발생에 근본적 원인이 된 <u>작업공정과</u> 그 작업공정 중에 <u>사고를 유발한 작업자의 수행내용 또는 행위</u>를 기술 ※ 재해자 본인의 작업공정 또는 내용이 아닌 동료 작업자의 작업공정·내용 일 수도 있음
  - 【 작업공정· 내용 예 : ○○프레스를 이용한 성형공정 중 금형교체 작업, 컨베이어를 이용한 화물 운반공정 중 차량에 상역작업, 관 배설공사 중 용접작업, 비계설치공정 중 볼트 체결작업, 오토바이로 음식배달 작업, 아파트 순찰업무 등 】
- ③ 재해당시 수행 작업공정·내용: <u>사고발생 당시</u> 재해자가 수행중인 작업공정과 작업수행내용 기술 ※ 재해원인이 된 작업공정·내용과 재해당시 수행 작업공정·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한번만 기재
- ④ 개인보호장비: 당해 재해와 관련하여 작업수행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함으로써 재해 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더라면 『착용대상』에 기재하고 , 재해 피해 경감이 곤란하면 『착용비대상』에 기재
  - ※ 착용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착용 또는 미착용 중 하나에 반드시 ☑표시하고 개인보호장비명 기재
- 【 **착용대상 예** :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중 낙하물에 *충돌*하여 <u>머리 상해 입은 경우</u> 】
- 【 **착용비대상 예** : 작업현장에서 *<u>안전화</u>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50m이상의 높이에서 *<u>추락</u>하여 <u>두개공 공절</u> 재해를 입은 경우 】*
- ⑤ 안전·방호설비 : 당해 재해와 관련하여 작업수행시 안전·방호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재해 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더라면 『설치대상』에 기재자이고, 재해 피해 경감이 곤란하면 『설치비대상』에 기재
  - ※ 설치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 또는 미설치 중 하나에 반드시 ☑표시하고 안전ㆍ방호설비명 기재
  - 【 설치대상 예 : 프레스작업 중 광전자식 안전방호장치 기능을 중지한 상태에서 성형 작업을 하다 프레스기에 끼이는 재해발생 】
  - 【 설치비대상 예 : 제품을 차량에 적재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추락한 재해 또는 공장에서 사무실로 이동 중 결빙된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 재해 】
- ⑥ 재해유발 기계, 물체(물질) : 사고 발생을 일으킨 직접원인이 된 설비, 시설 등 즉, 기인물을 말함
  - ※ 사고발생의 직접원인으로 재해자가 취급하던 설비가 아닌 주변설비 또는 동료 작업자의 취급 설비도 될 수 있음
  - 【 예 : 프레스, 호이스트, 벨트컨베이어, 분쇄기, 로울러기, 수공구, 바닥, 지붕, 산화에틸렌, 신나, 사람, 개 등 】
- ⑦ 재해발생형태 : 재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재해유발 기계 또는 물체(물질)와의 관계된 발생현상
  - 【 예: 떨어짐, 미끄러짐, 설비에 <u>끼임</u>, 회전부위에 <u>감김</u>, 날아오는 물건에 <u>부딪힝</u>, 적재물 <u>무너짐</u>, 화재, 감전, 고온저온에 접촉, 유해위험물 접촉 등 】
- ⑧ 가해물 : 재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기계, 물체 또는 물질
  - 【 예 : 목재가공용 둥근톱으로 각재를 절단하던 중 절단편이 비래되어 얼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기인물은 목재가공용 둥근톱이고 가해물은 각재 절단편임 】
- ⑨ 작업형태 : 동일 작업지역·작업공정에 투입한 인원과 작업형태가 아닌, 「동일 작업수행을 목적으로」 투입한 인원과 작업방식을 말함
- 【 예: 복수 2인 2인1조로 승강기를 이용 운반작업시 1명은 1층에서 화물을 적재, 1명은 5층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

## IV. 재해발생 과정 및 원인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십시오.

사고와 직접 연관이 되었던 「작업공정의 운전 또는 작업상황」과 사고 발생시점의 「작업자(또는 재해자)의 움직임, 행위」에 대하여 기재하고, 사고가 「어떤 형태<취급설비, 공구, 원재료와 작업자(또는 재해자)의 상관관계>」로 발생되었는지 단계별로 그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입

당사의 사충성형부 픙나스틱 용기 생산조 조장인 ○○○가 픙나스틱용기 생산 작업 중 제품의 원료인 p.p수지층 자동공급하는 장치에 문제가 방생하여 원료가 투입이 장되지 않자 이층 전건 하기 위하여 이동중 바닥에 넉겨있던 p.p수지에 의해 미끄러지면서 사충성형기 히터 충전 단자 부에 인손이 접촉, 강전된 재해인

재해를 유발한 설비·기계, 구조물, 작업공정 및 환경요인 등에 잠재된 불안전 요소는?(물적요인)	사충성형기 충전부 노축, 옥내바닥 정시정돈 북냥
재해를 초래하게 된 작업자 자신 또는 동료의 행동에 대한 불안전 요소는?(인적요인)	평상시 사축성형기 충전부가 노축된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작업바닥의 정너정돈 미흡